

대통신 등의 데이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9GHz의 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한편 기존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매방식에 의한 주파수 면허 획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FCC는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경매 실시 유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며 경매에 의한 주파수 면허 획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2.1GHz 대역은 70% 가량이 음성 위주의 기존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분배되어 있기에 여유 주파수 대역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대역이 분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2. 결 론

위와 같은 현상은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을 드러내는 일례로 볼 수가 있다. Nextel이 재배치를 제안한 800MHz은 정부용 주파수 이외에 대다수 이동통신업체가 진입하여 있어 간섭 및 통화적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용 주파수의 상업용 이전 및 주파수 교환 등 Nextel의 전략이 경쟁업체에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대두된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업자간 경쟁의 첫 관문이 국내와 같이 사업자 확보가 아닌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확보로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파수 정책에 있어 특정 대역 주파수 자원의 정량적 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선례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 [1] Reuters, "Nextel rejects alternative to its spectrum plan", May 11, 2004
- [2] The Washington post, "FCC Backs Off Nextel Plan to New Spectrum", May 21, 2004
- [3] USA Today, "Nextel says they won't move from spectrum spot", May 25, 2004

## 일본과 영국의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수정사항 발표

공정경쟁연구실 연구원 이경석  
(T. 570-4072, kysjin@kisdi.re.kr)

### 1. 개 요

접속료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에 있어 장기증분원가(이하 LRIC) 등 미래지향적비

용 산정방식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많은 국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접속요율 산정시부터 장기증분원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도 미래지향적비용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접속료를 LRIC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일본의 MPHPT는 2003년 9월에 LRIC모형 연구 그룹을 재소집하여, 2005년 이후 접속료에 적용할 LRIC 모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말에 수정된 LRIC 모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영국의 Ofcom도 1999년부터 LRIC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2001년에 이동전화망에 대한 LRIC모형을 공표한 적이 있으며, 2004년 6월 1일에 LRIC모형의 2차 수정을 수행하고 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기서는 일본과 영국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LRIC 모형의 수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 2. 일본의 LRIC 모형의 수정사항

1999년 9월에 LRIC 1차 모형을 산정하여 2000 회계연도부터 2002 회계연도까지의 접속요율을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2002년 3월에 2차 모형을 산정하여 2003회계연도와 2004회계연도의 접속요율을 산정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MPHPT는 정보통신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200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LRIC 모형은 통화량 감소와 신규투자의 감축 등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수정효과를 반영하여 다시 재조정하였다.

NTT East와 NTT West의 end-to-end 통화량과 가입자 수는 2001회계연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동전화시장의 눈부신 성장, 상당히 증가한 초고속 가입자와 VoIP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기인한다. NTT East와 NTT West의 신규투자금액도 2000회계연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NTT의 발표에 의하면, 이는 유선전화망에서 IP 전화네트워크로 필연적으로 통화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선전화망에 대한 신규투자를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해 MPHPT는 유선전화망의 신규투자의 감소를 반영, 통화량과 원가 변화간의 관계를 재평가 등의 관점에서 LRIC 모형을 수정하였다. 먼저 신규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내용연수를 재검토하였으며, 투자 감소기간에 발생하는 유헴설비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또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반영하였고, 네트워크 설계관련 변수들을 재조정하였다.

### 3. 영국의 LRIC 모형의 수정사항

Ofcom은 2001년 9월에 이동전화망의 LRIC 모형을 개발한 이후, 2002년 4월에 1차 모형 정비를 하였다. 2003년 12월 19일에 이동전화 음성접속료에 대한 자문서를 발간하여 LRIC 모형 2차 정비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에 이에 대한 Statement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모형의 수정사항은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수정, 32Mbit/s BSC-MSK links의 원가산정방법 변경, 2Mbit/s and 8Mbit/s microwave links의 원가산정방법 변경, MSK의 라우팅 팩터 변경, 2G 주파수사용료 수정 등이다.

#### 참고자료:

- [1] MPHPT, "Reprot by the 'Study Group on Long-Run Incremental Cost(LRIC) Model' Released", MPHPT Communications News Vol 15, No. 3, 2004. 5. 28.  
 [2] Ofcom, "Wholesale Mobile Voice Call Termination", Statement, 2004. 6. 1.

## 전자재판(e-filing) 서비스 시범 운영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양인애  
 (T. 570-4009, inaeya@kisdi.re.kr)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 아닌 인터넷전자문서로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오는 8월말부터 시범 적용된다. 대법원은 종이없는 '전자재판'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자파일링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독촉사건에 적용, 연내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안 통과 때까지 서울중앙지법의 2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지정,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접수도 받아 시스템을 검증한 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이 다루는 e-filing은, 사건별(case별) filing이라는 측면에서 ECF(electronic case filing)라고 흔히 부르며, 이는 Case Management<sup>1)</sup>와 Electronic Case Filing<sup>2)</sup>의 두 가지로 구별